

의안번호	제2859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11. 14.

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5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 14.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성실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, 지원대상자 요건 및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(현행) 「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
→ (개정) 「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성실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

다. 지원대상자 요건 명확화(안 제3조)

- 고성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중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

라. 성실납세자 지원사항 확대 등(안 제5조)

- 1) 1만원 상당의 내고장상품권 → 5만원 이하의 내고장상품권
- 2) 재선정 제외기간 명시: 2년간

마. 명부관리 강화(안 제6조)

- 탈세,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예산조치사항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
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7263호(2024. 9. 23.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4-1494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9. 25. ~ 2024. 10. 15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방세”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.
2. “성실납세자 등”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.
3. “선정기준일”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선정기준일 현재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성실납세자: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
2. 유공납세자: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최근 1년간 지방세

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,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(세외수입 체납 포함)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

제4조(지원대상자 선정)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

1. 성실납세자: 납부인원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
2. 유공납세자: 지방세 납부액, 체납유무, 징수유예유무,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

제5조(지원 등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1. 성실납세자: 5만원 이하의 내고장상품권 지급
 2. 유공납세자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지원
 - 가.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
 - 나. 표창장 또는 감사패
 - 다.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조치
- 라.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

② 성실납세자에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.

제6조(명부관리 및 선정취소)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,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.

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성실납세자 지원: 5만원 이하의 내고장상품권 지급(예산의 범위 내)

※ 2025년 당초예산 요구: 6,000,000원(30,000원 × 200명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.

작성자: 재무과장 이 현 주

□ 지방세기본법

제8조(지방자치단체의 세목)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통세

가. 취득세

나. 등록면허세

다. 레저세

라. 지방소비세

2. 목적세

가. 지역자원시설세

나. 지방교육세

④ 시·군세(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담배소비세

2. 주민세

3. 지방소득세

4. 재산세

5. 자동차세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공직선거법

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제4항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·조례에 따라 표창·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

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<신설 2010. 1. 25.>

1. 종전의 대상·방법·범위·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추가되는 경우

□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. 11. 11.] [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509호, 2019. 11. 1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동차세 연납자”라 함은 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 중 고지서 1매당 본세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.
<개정 2019.11.11. 조 2509>

2. “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”라 함은 「고성군세 조례」(이하 “군세조례”라 한다)에 규정한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.

3. “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”라 함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,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한다.

1. 자동차세 연납자
2. 군세조례에 규정한 정기분 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
3.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

제4조(대상자 선정)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과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.
2.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, 과거 포상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.

제5조(지원사항)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에게 1만원 상당의 내고장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에게 1만원 상당의 내고장상품권 등 지급
2. 제3조제3호의 대상자에게 매년 등기우편료 상당액 지급
3.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가.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기한 연장시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완화

나. 기타 각종행사에 우선초청 대상자로 선정, 위원회 위촉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

제6조(명부관리) 군수는 제3조3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, 체납유무, 징수유예 유무,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 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